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61호 2010. 10. 18. (월)

조 례

- 조례 제2010-557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2
- 조례 제2010-558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5
- 조례 제2010-559호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7
- 조례 제2010-560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0
- 조례 제2010-561호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12

고 시

- 고시 제2010-78호 [하천점용 허가 등 고시].....14
- 고시 제2010-79호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북구세입·세출결산 승인사항 고시]..15

공 고

- 공고 제2010-699호 [신규공인등록 공고].....18

【 안 내 문 】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

⇒ 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 행정정보 → 알림마당 → 북구 공보에서 열람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 북구 편집 : 문화홍보과 (☎ 219-7207 행정 720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10년 10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57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지식과 정보제공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독서진흥을 통해 책 읽기 좋은 행복 북구 실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염포양정도서관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1(염포동 348-3번
지)에 위치한다.

제7조제1호 중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을 “발전”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구성 방침”을 “구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를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
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를 “정가로”로 한다.

제23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2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0조를 제22조로 하고, 제19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8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독서진흥 및 문화강좌) ① 구청장은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종 교육 및 문화강좌 등을 개설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중 봉사활동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종전 제22조) 중 “사항”을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2010. 6. 15. 옹포양정도서관의 개관에 따라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청장의 독서진흥 시책 및 문화강좌 운영과 자원봉사자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구립 도서관이 진정한 책 읽기 좋은 행복 북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옹포양정도서관의 위치 표기(제2조)

나. 도서관운영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도 회의 소집을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제5조 및 제9조)

다. 구청장의 독서진흥 시책 마련과 문화강좌 운영 규정 신설(제18조)

라. 자원봉사자 운영 및 포상 규정 신설(제19조)

마. 도서관 자료의 제적에 대해 모법인 「도서관법」에 근거가 없어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에서 정하고자 함(제21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10년 10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58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수수료 면제요청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7조제1항에 다음 항목을 신설함.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제7조제1항제5호)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제7조제1항제6호)
-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제7조제1항제7호)
-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제7조제1항제8호)
-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제7조제1항제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
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10년 10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59호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무인발급기에 따른 증지수입금은 1주일 이내에 금고 또는 수납대 행점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8호서식”을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수수료정산프로그램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수수료정산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계기, 무인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

템”으로, “계기 및 무인발급기상”을 “계기, 무인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상”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주민과-3337호(2010.04.28)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총무과-13829호(2010.07.06)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절차 간소화 계획에 따라 수입증지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증지 인쇄의 제도적 근거 마련
- 그 밖에 무인발급기의 증지수입금 납입기간과 일일 결산방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

- (1)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일반프린터기로 인쇄 가능(제5조의3 신설)
- (2)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일일결산 시 수수료정산프로그램 이용(제12조제2항 개정)
- (3)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이용 시 잘못 출력된 증지에 대해 결손 처분 가능(제12조제3항 개정)

나. 그 밖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 반영

- (1) 무인발급기의 증지수입금 납입기간 1주일 이내로 늘임(제12조제1항 신설)
 - (2) 무인발급기의 일일결산 시 수수료정산프로그램 이용(제12조제2항 개정)
- ※ 별지 제8호서식 무인발급기 수입증지요금관리대장 삭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10년 10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60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전용수거용기의 무상 교체 및 배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무상으로 교체 및 배부할 수 있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과정에서 전용수거용기가 파손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처음 지정할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무상 교체 및 배부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의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주민편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되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한 무상 교체 조항 신설(제12조제1호)
- 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한 전용 수거용기 무상 배부 조항 신설(제12조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10년 10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61호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 가. 시행초기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였으나,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역기능이 각종언론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
- 나. 환경부는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을 폐지하고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결정('04. 1월 제정 → '08. 5월 폐지)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복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2004. 6. 7제정)

하천점용 허가 등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 및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 점·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 명	울산개발(주)						
주 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09번지 월드메르디앙 502호						
점용위치	신천동 745-1번지 신천동 745-123번지	하 천 명	동천				
점용목적	하수관거 설치(D600, L=176.1m)	점용면적 (㎡)	구 분	계	일시	영구	
			지방하천	528.3	211.3	317	
점용기간	◦일 시 : 2010. 10. 11. ~ 2011. 03. 31. ◦영 구 : 2010. 10. 11. ~ 영구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북구세입·세출결산 승인사항 고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2항규정에 의거 2010. 10. 18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 123회 제1차 정례회 승인을 받은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북구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0. 18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합 계	182,763,847,680	184,049,313,540	153,405,944,740	30,643,368,800	
일 반 회 계	177,823,837,680	178,923,837,480	152,693,887,910	26,229,949,570	
기 타 특 별 회 계	소 계	4,940,010,000	5,125,476,060	712,056,830	4,413,419,230
	의료급여기금	158,083,000	166,226,180	128,688,450	37,537,730
	폐기물처리시설	3,450,345,000	3,465,479,300	0	3,465,479,300
	기 반 시 설	343,750,000	327,496,710	0	327,496,710
	주 차 장	971,132,000	1,149,523,620	567,611,380	581,912,240
	발전·수변·자연·관광·사업	16,700,000	16,750,250	15,757,000	993,250

○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단위 : 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가)	지 출 액 (나)	다음년도 이월액(다)	집행잔액 (가-나-다)
계	30	23,583,402,610	10,730,633,110	12,758,816,250	93,953,250
명시이월	13	6,751,163,910	2,799,200,550	3,878,622,360	73,341,000
사고이월	2	210,000,000	144,252,570	45,135,180	20,612,250
계속비이월	15	16,622,238,700	7,787,179,990	8,835,058,710	0

○ 기금현황

(단위 : 원)

종 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5종	2,595,191,037	326,729,780	2,921,920,817

○ 채권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1,501,895,010	158,201,030	68,637,270	1,591,458,770
일 반 회 계	1,171,902,880	113,614,000	0	1,285,516,880
기타특별회계	46,876,030	4,531,980	6,562,880	44,845,130
기 금	283,116,100	40,055,050	62,074,390	261,096,760

○ 채무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	조 정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2,560,000,000	△807,671,330	0	1,752,328,670
일 반 회 계	2,560,000,000	△807,671,330	0	1,752,328,670
기타특별회계	0	0	0	0

○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 해 년 도 증 감		당해년도말현재액
		증 가	감 소	
계	429,675,773,987	40,114,864,842	9,859,011,112	459,931,627,717
행 정 재 산	427,681,835,577	40,023,432,082	9,749,742,912	457,955,524,747
일 반 재 산	1,993,938,410	91,432,760	109,268,200	1,976,102,970

○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		당해년도말보유현황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224	2,298,360,210	23	332,253,620	247	2,630,613,830
정수물품	224	2,298,360,210	23	332,253,620	247	2,630,613,830

○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별	건 수	지출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불 용 액
계	4	38,475,000	29,598,770	29,598,770	8,876,230
일 반 회 계	4	38,475,000	29,598,770	29,598,770	8,876,23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보고서

(단위 : 원)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 산	464,196,858,902	수 익	127,096,160,665
부 채	7,257,622,155	비 용	117,311,835,392
순자산	456,939,236,747	운영차액	9,784,325,273

※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은 울산광역시북구회계정보과(T.219-7242, FAX219-7249)로 문의 바랍니다

공 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제6조에 의거 등록된 공인을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신규공인 최초사용 가능일 : 2010년 10월 18일
- 등록 전자이미지 공인

공 인 명	규격(cm)	서 체	인 영
(민원사무전용)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인	2.5 × 2.5	한글전서체	